

취업진로정책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업진로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대학일자리개발처장과 각 학부(과) 취업 총괄 책임교수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학일자리개발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대학일자리센터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.

제3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, 심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재학생 및 졸업생 **진로 및** 취업지도의 기본방침 수립
2.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
3. 졸업생 취업현황, 취업전망 파악 및 대책 수립
4. 취업 관련 교육과정, 정부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
5. 취업인센티브 관련 사항
6. 기업체·정부기관·사회단체 등 취업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
7. 취업 동문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 및 졸업생 DB 관리
8. 산학협력교수 실적에 관한 사항
9. 기타 졸업생을 위한 취업지도에 관련된 사항
10. 취업 진로교육상담 관련된 사항
11. 위원회에 의뢰 되는 사항

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,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 (주관부서)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7조 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

취업진로정책위원회 규정(8-15-1)

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8조(서면결의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6조)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)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)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조, 제4조)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6조)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